

유니버살 生命保險에 대한 NAIC 모델規定

본 내용은 NAIC Model Insurance Laws, Regulations and Guideline의 Volume II에 수록된 'Universal Life Insurance Model Regulation'을 발췌 번역한 것임.

I. 權限(Authority)

이 規定은 특정 州保險法の 특정 법조항의 권한 하에 공포되며, 특정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II. 目的(Purpose)

본 規定의 목적은 유니버살 生命保險(이하 UL로 표기함)의 개발과 판매를 수용하기 위해 生命保險商品에 대한 기존의 規定을 보완하는 것이다.

(주: 본 規定立案者는 UL이 여타 生保商品과 경쟁관계에 있는 또다른 하나의 상품에 불과하기에 가능한 한 여타 生保商品과 유사한 방식으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 規定은 UL이 기존의 규제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다룬다. 이 規定은 申告, 募集, 廣告등과 관련된 기존의 요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보완한다.)

III. 定義(Definitions)

1. UL

UL은 利子收益(配當積立金, 保險料 預置基金, 기타 補完的 計定과 관계된 것을 제외한 것)과 死亡保障費用(mortality charges) 및 事業費用(expense charges)이 분리 결정되는 個人生命保險을 의미한다. UL은 特約에 의해 제공되는 給付金에 대한 비용등 기타비용과 수익을 제공할 수도 있다.

(주: 이 規定은 특별히 個人生命保險을 위해 입안된 것이지만 단체UL의 발행을 금지하는 것이 그 의도는 아니다. 州當局은 團體保險에 적절하다고 여겨지고 州法과 상충되지 않는 본 규정중의 일부를 자유로이 채택할 수 있다. 전통적인 終身生命保險의 단면적인 특성과 달리 UL의 특성은 특정비용이 정기적으로 공제되고 증권발행시 결정되지 않은 특정 金利로 부리됨으로서 證券價額(poli-

cy value)이 미리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保險社에 의해 증권발행시 사전에 결정된 保險料 納入方式을 수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UL의 責任準備金 算出(valuation)과 非沒收條項(nonforfeiture)은 保險料 納入方式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러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可變保險料와 固定保險料의 정의상 차이점을 분명히해야 한다.)

2. 可變(Flexible Premium) UL

可變 UL은 保險契約者가 保險料의 금액이나 지급시기를 또는 保險金額을 독립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UL을 의미한다.

3. 固定(Fixed Premium) UL

固定 UL은 可變 UL을 제외한 모든 UL을 의미한다.

4. 金利連動(Interest-Indexed) UL

金利連動 UL은 金利가 다른 지수와 연동되는 UL을 의미한다.

(주: 이러한 정의는 變動 約款貸出 金利(variable policy loan interest rate)條項만 있고 다른 지수와는 연동되지 않는 증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規定은 현재 金利連動만 취급하고 있지만, 死亡率 등 기타 요소의 연동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金利의 기타 요소가 지수와 연동되는 상품이 개발된다면 이 規定에 수정이 가해질 수도 있다. 이 規定은 보험당국이 이러한 기타요소의 연동에 관련된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5. 純解約還給金(Net Cash Surrender Value)

純解約還給金は 解約시 保險契約者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의미한다.

6. 解約還給金(Cash Surrender Value)

解約還給金は 純解約還給金에 상환되지 않은 約款貸出金額을 합한 것이다.

7. 證券價額(Policy Value)

UL의 證券價額は 개별적으로 결정된 利子收益, 死亡保障費用, 事業費用, 기타 비용이 적용된 금액을 의미한다.

(주: UL은 다른 목적을 위해 지정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利子收益이 계산되는 기초, 死亡保障費用의 算出을 위해 필요한 純保障保險金額(net amount at risk)을 결정하기 위해 保險金額에서 차감해야 하는 금액, 解約시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러한 금액은 모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 規定의 목적상 이러한 금액은 위에서 정의된 證券價額과 우연히 같을 수 있을지라도 證券價額을 정의하지는 않는다.

證券價額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없어야 한다. 證券價額을 保險契約者가 직접 수혜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신 證券價額은 解約還給金, 純解約還給金, 死亡保險金 또는 滿期給付金과 같은 수혜할 수 있는 給付金を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간단계이다. 실제로 保險契約者에게 제공되는 給付金は 責任準備金 算出 및 非沒收基準을 설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IV. 範圍(Scope)

이 規定은 NAIC 變額保險 모델규정의 19장 2항에 정의된 증권을 제외한 모든 개인 UL에 적용된다.

V. 責任準備金 算出(Valuation)

1. 要件

UL에 대한 最低算出基準(minimum valuation standard)은 CRVM(Commissioners Reserve Valuation Method)이 되어야 한다. 主保險(basic policy)과, 특정 계약상당일(policy anniversary)에 保險料가 분리되어 납입되지 않는 給付金과(또는) 特約에 대한 期末責任準備金(terminal reserve)은 平準純保險料 責任準備金(net level premium reserve)에서 (C)와 (D)를 감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C)와 (D)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平準純保險料方法에 의한 責任準備金은 $[(A) - (B)]r$ 이 되어야 하는데 (A), (B), r은 다음과 같다. (A)는 責任準備金 算出時點에서의 將來 保障 給付金の 현재가치이며 (B)는 $PVFB \cdot \ddot{a}_{x+t} / \ddot{a}_x$ 이다. 여기서 PVFB는 將來 保障滿期保險料(Guaranteed Maturity Premiums, 이하 GMP)가 保險契約者에 의해 납입된다고 가정하고 증권상 기재된 또는 保險者에 의해 공표된 모든 保障事項을 고려한 증권발행시점에서의 모든 保障給付金の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x와 x+t는 x, x+t 연령의 계약납입일에 납입이 시작되어 約款上 保險料納入이 이루어

어질 수 있는 最高年齡(highest attained age)까지 계속되는 연금 1단위의 현재가치이다. x는 증권발행연령이고 t는 保險期間(duration)으로 정의된다.

可變 UL의 GMP는 발행시 및 발행이후의 保險料 納入이 허용된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납입되는 平準 總保險料(level gross premium)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증권상 허용된 最終滿期日(latest maturity date)에(아니면 責任準備金 算出用 生命表上的 最高年齡) 證권을 만기화시키는 것이다.¹⁾ GMP는 외부지수와 연동된 保障事項을 제외한 발행당시의 모든 約款保障事項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固定 UL의 GMP는 증권발행시 最低保障事項을 제공하는 증권상의 保險料가 되어야 한다.²⁾

만약 증권이 可變 UL이고 證券價額이 保障滿期額(Guaranteed Maturity Fund, 이하 GMF)보다 작은 경우에는 r은 證券價額의 GMF에 대한 비율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r은 1의 값을 갖는다. 특정 보험기간에 대한 GMF는 장래 GMP와 더불어 발행당시의 모든 保障事項에 기초한 證권을 만기화시키는 금액이다.

(C)는 $[(a) - (b)] \cdot r \cdot \ddot{a}_{x+t} / \ddot{a}_x$ 인데 (a) - (b)는 1980년에 개정된 標準 責任準備金 算出法(Standard Valuation Law)의 4장에 정의되어 있다.

(D)는 증권상의 구조적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 1) 滿期還給金(maturity amount)은 最低死亡保險金 Corridor의 존재를 제외하고 死亡保險金이 증권기간 동안 고정된 경우는 初期死亡保險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死亡保險金이 特定保險金(specified amount)에 證券價額 또는 解約還給金を 합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最低死亡保險金 Corridor의 존재는 제외) 滿期保險金이 特定保險金額과 같아야 한다.
- 2) 可變 UL과 固定 UL에 대한 GMP는 증권상 제공되는 死亡保險金 Corridor에 대해 조정되어야 한다. GMP는 모든 비용을 지급하기에 필요한 保險料 보다 작을 수도 있다. 이것은 계약 첫째 사업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첫째에 특히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C)와 유사한 것들의 합이다.³⁾ GMP, GMF와 (B)는 증권상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재계산되어야 한다. 이 재계산은 위에서 언급된 것과 일관성을 갖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將來 保障給付金은 (i) GMF와 證券價額중 큰 것을 투영(projecting)하고, 필요시 장래 GMP를 고려하고, 증권상 기재된 것이나 保險者에 의해 공표된 金利, 死亡率, 事業費用控除에 대한 모든 保障事項을 사용하고 (ii) 증권에 기재된 것이나 保險者가 공표한 證券價額에 의존하지 않는 모든 保障給付金を 고려함으로써 결정된다.

모든 현재가치는 (i) 동일연도에 발행된 증권에 대해 標準 責任準備金 算出法 (1980년 개정)에 規定된 金利, (ii) 동일연도에 발행된 증권에 대해 標準 責任準備金 算出法(1980년 개정)에 규정된 死亡率 또는 保險監督官에 의해 승인된 기타 生命表에 수록된 死亡率, 그리고 (iii) 증권과 더불어 평가되는 特約에 의해 제공되는 추가적인 給付金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生命表를 사용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주: 保險者가 증권에 기재된 保障事項(契約上 保障事項)보다 保險契約者에게 보다 유리한 保障事項을 공표하는 한 그 保障事項이 장래 保障給付金의 결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가치의 계산에 사용되는 死亡率과 金利는 標準 責任準備金 算出

法上의 最低基準이다. 1942년 標準 責任準備金 算出法이 채택된 이후로 標準下體 死亡率(substandard mortality)에 기초한 계산을 위한 조항이 만들어졌다 [標準 責任準備金 算出法의 Section 3 (g)]. 이 조항은 과거에 드물게 사용되었는데 UL의 신축성을 미루어 보아 증권에 할당된 死亡率 分類를 반영하기 위해 UL에 보다 자주 사용될 것이라 기대된다. 구조적 변화를 시행할 때 責任準備金을 계산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여러가지 방법이 사용가능하지만 아마도 가장 간단한 방법은 GMF 및 GMP값과 現行 額面保險金額과의 일정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GMF와 GMP값은 額面保險金額의 달러당 얼마로 계산한 다음 단순히 新額面保險金額을 곱함으로써 산출된다. 이것은 여타방법에 수반되는 복잡성을 제거할 것이다.)

2. 代替 最低責任準備金

특정계약연도에 UL의 GMP가 責任準備金 算出用 純保險料 (valuation net premium; 責任準備金을 계산하는데 실제로 사용되나 死亡率과 金利에 대한 最低算出基準을 적용함으로써 계산됨) 보다 작은 경우, 이러한 UL에 요구되는 最低責任準備金은 (1) 또는 (2)중 큰 것이어야 한다.

(1) 실제로 사용되는 방법, 生命表 및 金利에 따

3) 구조적 변화는 약관상의 자동적 변화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구조적 변화는 保險契約者에 의해 발생하며 保障契約者에 의해 발생하며 保障給付金의 변동, 最終滿期日의 변동, 保險料納入期間의 변동등을 포함한다. 모든 수익(credit)과 비용이 일년에 한번 증권발행일에 재결정되는 固定 UL에 대한 1987년 1월 1일 이후의 평가에 있어서는 保障給付金등이나 固定保險料의 변동은 약관상의 자동적 변화로 인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발행일 증권에 대한 GMP에 의해 예상되지 못한 경우 구조적 변화에 포함되어야 한다. 固定 UL의 구조적 변화로 (B)가 다시 산출될 경우, 장래보장급부금의 현가인 PVFB에서 발행당시 증권에 명시된 보장사항을 초과하는 만큼의 보장급부금(보험자에 의해 보장제시된 이자율, 사망율, 사업비용을 초과함으로써 발생됨)은 제외시켜야 한다.

라 계산된 責任準備金

(2) 실제로 사용되는 방법을 따라 계산되지만 死亡率과 金利에 대한 最低算出基準을 사용하고 責任準備金 算出用 純保險料가 GMP를 초과하는 계약년도에는 責任準備金 算出用 純保險料를 GMP로 대체하여 계산된 責任準備金

平準純保險料 기준에 의거한 UL 責任準備金에 대해서는 責任準備金 算出用 純保險料가 $PVFB/a_x$ 가 되고, CRVM에 의거한 責任準備金에 대해서는 責任準備金 算出用 純保險料가 $PVFB/a_x + [(a) - (b)]/a_x$ 가 된다.

VI. 非沒收條項(Nonforfeiture)

1. 可變 UL에 대한 最低解約還給金

可變 UL에 대한 最低解約還給金은 主保險과, 保險料가 분리되어 납입되는 기타 給付金 및 特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되어야 한다. 다음의 요건은 主保險과 保險料가 분리되어 납입되지 않는 給付金과 特約에 관한 것이다.

증권에 이자가 부리되는 시점에서 가능한 最低解約還給金(부채와 배당이익 조정전)은 그 시점까지의 지급된 納入保險料를 적립한 금액에서 그 시점까지의 下記 사항의 積立金額을 공제한 후 (모든 것은 實際金利 또는 利子收益이 증권에 조건없이 부리되는 金利로 적립됨) 사용되지 않은

초기 및 추가 허용비용의 미상각분을 감한 것이 되어야 한다.

1) 給付金費用(benefit charge)

2) 계약 초회년도와 保險金額의 증액이 이루어지는 해의 평균화된 관리비용(averaged administrative expense charges)

3) 기타 년도의 실제관리비용

4) 허용된 수준의 新契約費用을 초과하지 않는 新契約費用

5) 실제 발생한 서비스비용(解約還給金 또는 完納非沒收給付金(paid-up nonforfeiture benefit의 선택에 따른 비용제외)

6) 일부인출(partial withdrawal)에 대한 공제액 모든 적립부분은 증권에 조건없이 적용되는 實際金利로 적립된다.

保險料와의 비용에 대한 이자는 證券價額 決定時 附利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적립되어야 한다.

給付金費用은 死亡率에 대한 비용과 保險料가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납입되지 않는 特約이나 보완적인 給付金에 대한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 만약 給付金費用이 매우 평준적이고 積立金(cash value)이 낮은 수준이거나 전혀 없다면, 保險者가 증권의 다른 특성에 관련되어 積立금이 적절하다는 타 당성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보험감독관은 보다 높은 수준의 積立금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⁴⁾

事業費用은 保險料納入時 마다의 비용(charge per premium payment), 納入保險料 1달러당 비

4) UL상품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급부금비용과 적립금의 규제가 본조항의 내용에 제한되어서는 안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가적인 제한은 상품개발을 제한할 것이다. 둘째, 추가제한은 보험자가 보장하지 않은 현행 실제 급부금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저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행 급부금 비용의 감소는 보험자에게 재정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는 감소된 장래 급부금 비용의 감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시장압력이 보험자로 하여금 급부금비용을 제한하도록 유인할 것이다.

용, 保險金額 1,000 달러당 定期的 費用, 증권비용 당 定期的 費用, 기타 계약자의 서비스 청구와 관계없이 증권상 허용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만약 특정거래나 해당연도내의 기간에 대한 事業費率이 證券價額를 평가함에 있어 2년차 계약년도에서 20년차에 부과될 상응하는 事業費率의 산술적 평균과 일치한다면, 어떤 연도의 平均事業費用은 그 연도에 부과되는 것과 같아야 한다.

新契約費用은 계약첫해 실제로 발생한 서비스비용을 제외한 事業費用에서 그해의 平均事業費用을 공제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追加新契約費用은 保險金額이 증액된 해에 실제로 발생한 서비스비용을 제외한 事業費用에서 그해 平均事業費用을 공제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保險金額 증가연도는 계약자의 요구(또는 約款上的 조건)에 따라 保險金額이 증가하는 날짜에 시작하는 연도가 되어야 한다. 서비스비용은 保險契約者の 서비스 요구(예컨대 將來 給付金을 예시해 달라는 것과 같은 요구) 또는 특정거래 결과 부과되는 증권상 허용되는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新契約費用의 허용한도는 保險料와 保險金이 固定된 養老保險에 대한 SNFL(Standard Nonforfeiture Law for Life Insurance, 1980년 개정)의 5장의 (ii), (iii), (iv)항 또는 5장-c(1)의 (ii), (iii)항에서 제시되는 허용한도 이어야 한다. 단 이 養老保險은 額面保險金額이 可變 UL의 初期 額面保險金額과 같아야 하고 可變 UL에서 保險料가 납입될 수 있는 最高年齡까지 平準保險料가 매년 납입되어야 하고, 증권상 허용되는 최종만기일이 아니면 責任準備金 算出用 生命表(valuation mortality table)상의 最高年齡에서 만기화된다. 新契約費用의 허용한도중 사용되지 않은 위에서 정의된 初期新

契約費用을 초과하는 初期許容費用이 되어야 한다.

만약 保險金額이 保險契約者の 요청(또는 約款上的 조건)에 따라 증가한다면, 追加許容費用과 사용되지 않은 追加許容費用은 위에서 서술한 것과 SNFL(1980년 개정)의 5장-c(5)와 일치하는 기초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 때 증권상 그 시점에서 허용된 額面保險金額과 最終滿期日을 사용해야 한다. 연령 $x+t$ 의 계약상당일이 시작하는 계약년도 동안에 사용되지 않은 初期許容費用의 미상각분은 사용되지 않은 初期許容費用을 a_{x+t}/a_x 로 곱한 것이 되어야 한다. 사용되지 않은 追加許容費用의 미상각분은 사용되지 않은 追加許容費用과 위와 유사한 비율 (a_x 를 追加許容費用이 결정된 시점에 시작하는 연금으로 대체하여 구함)을 곱한 것이 되어야 한다.

(주: 規定立案者는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終身生命 初期許容費用을 선택했다. 매우 신축성이 있지만 UL은 일반적으로 終身生命保險으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회사가 終身保障을 제공하는 保險料水準을 장려한다. 입안자들이 인지하는 모든 UL은 終身保障을 제공할 수 있는 平準純保險料를 갖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UL이 終身保險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 終身保險은 생각보다 훨씬 신축적이다. 保險料의 납입이 定期保險을 선택함으로써 중지될 수도 있고 約款貸出은 保險料 納入을 정지시키기도 하고 유지시키기도 하며, 保險料納入이 체감되어 갈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終身保險 費用限度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SNFL은 많은 형태의 定期保險에 解約還給金을 요구하지 않는다. 기타 모든 終身保險은 SNFL하의 終身保險보다 큰 허용

비용을 유발한다. 保險契約者의 계획된 保險料에 의거하여 신계약내용을 도출해 내는 또다른 방법이 고려되었으나 기각되었다.)

2. 固定 UL에 대한 最低 解約還給金

固定 UL의 경우 最低解約還給金은 主保險과 保險料가 개별적으로 분리 납입되는 給付金과 特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음의 요건은 主保險과 保險料가 개별적으로 납입되지 않는 給付金과 特約에 대한 것이다.

附利되는 시점에 가능한 最低 解約還給金(부채와 배당이익 조정 이전)은 (A)-(B)-(C)-(D)가 되어야 한다.

(A)는 장래에 보장된 모든 給付金の 현재가치이다.

(B)는 將來 調整保險料의 현재가치이다. 調整保險料의 계산은 SNFL(1980년 개정)의 5장, 5-a 또는 5-c의 (1)에 기술되어 있다. 만약 5-c의 (1)이 적용가능하다면 非沒收(nonforfeiture) 平準純保險料는 $PVGB/\ddot{a}_x$ 가 되어야 한다. (PVFB와 \ddot{a}_x 는 5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C)는 증권발행일 이후 保險者가 공표한 保障事項 때문에 발생하는 非沒收 平準純保險料와 유사한 금액의 현재가치이다. \ddot{a}_x 는 공표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서 시작하여 공표에 의해 보장된 기간의 말까지 지급가능한 연금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

(D)는 증권상 구조적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B)와 유사한 금액의 합이다.

將來 保障給付金은 (i) 證券價額을 투영(projecting)하고, 將來保險料를 고려하며, 모든 保障金利, 死亡率, 費用控除등(증권에 기재된 것이나 保險者

에 의해 공표된 것)을 사용하고 (ii) 證券價額에 의존하지 않는 증권에 기재된 또는 保險者에 의해 공표된 保障給付金を 고려하여 결정된다. 모든 현재가치는 (i) 동일연도에 발행된 증권에 대하여는 SNFL(1980년 개정)에서 정한 金利, (ii) 동일연도에 발행된 증권에 대한 SNFL(1980년 개정)에 기재된 것이나 保險監督官이 승인하는 다른 生命表상의 死亡率을 사용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주: (C)에 포함되는 것은 장래에 보장된 實際金利의 증가, 장래 보장된 實際死亡保障費用的 감소, 事業費用的 감소 등이다.)

3. 最低 完納 非沒收給付金(Minimum Paid-Up Nonforfeiture Benefit)

만약 UL이 完納 非沒收給付金の 選擇權을 제공한다면, 그것의 현재가치는 최소한 그 선택이 유효한 날짜에 증권에 의해 제공되는 解約還給金과 같아야 할 것이다. 현재가치는 최소한 (i) 可變 UL의 경우는 證券價額를 결정하기 위해 증권상 보장된 死亡率과 金利 (ii) 固定 UL의 경우는 SNFL(1980년 개정)에 의해 完納 非沒收給付金에 허용되는 死亡率과 金利만큼 계약자에게 유리한 死亡率과 金利 基準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 完納 非沒收給付金 대신에 保險者는 계리상 동일한 死亡給付金の 더 큰 금액 또는 더 긴 기간 또는 가능하다면 養老給付金の 더 큰 금액 또는 더욱 빠른 지급을 제공하는 다른 完納給付金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납입이 지연된 保險料의 납입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 적절한 요구가 있어야 함)

(주: 부속적인 保障事項이 있는 경우 이러한 保障事項은 最低 完納 非沒收給付金を 계산할 때 고

려해야 한다.

保險料가 납입되는 경우와 완납되는 경우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가치는 可變 UL에 대한 Section 6(A)와 固定保險料에 대한 Section 6(B)와 일치해야 한다.

최초의 SNFL(1942년)의 채택이후 標準下體 死亡率에 기초한 非沒收給付金 계산을 위한 조항이 만들어졌다. 이 조항이 과거에는 자주 사용되지 않았지만, UL의 신축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標準下體 死亡率이 保險者에 의해 증권에 부여된 死亡率 분류를 반영하기 위해 UL에 보다 자주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공제 이후의 결과가 이 章에서 요구되는 最低 解約還給金 보다 적다면 해약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Ⅶ. 約款強制條項 (Mandatory Policy Provisions)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증권상에 명기되어야 한다.

1. 保險契約者에 대한 定期的 公示

증권 상태의 인식에 도움이 되는 보고서를 무료로 최소한 매년 保險契約者에게 제공한다는 것이 증권상 명기되어야 한다. 報告書期間(report period)의 終期가 보고서 우송일자의 3개월이내 이어야 한다. 이 보고서의 자세한 요건은 제 9 장에서 기술된다.

(주: 固定 UL상품에 대해서는 解約還給金이나 非沒收金額에 대한 표가 증권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법에 의해 요구할 수도 있다. 이 표는 可變 UL상품에서는 그 유용성이 거의 없기 때문

에 증권에 포함되는 것이 요구되어서는 안된다. UL상품의 본질상 可變 UL증권의 발행시 결정되지 않는 이러한 표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定期的 公示가 고안된 것이다.)

2. 例示報告書 (Illustrative Reports)

保險契約者의 요구가 있을 경우 例示報告書를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의 最低要件에 대해서는 제 8장에 기술하기로 한다. 保險者는 보고서 제공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3. 保障事項(Policy Guarantees)

증권상 最低保障金利, 最大保障死亡率, 最大保障事業費가 명기되어야 한다. 증권에 기재된 모든 수치와 날짜는 保障事項에 기초해야 한다. 非保障事項에 기초한 어떤 수치도 증권에 명시되어서는 아니된다.

4. 解約還給金の 계산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는 解約還給金の 계산에 대한 최소한의 일반적 서술이 증권에 포함되어야 한다.

- 1) 最大 保障事業費用
- 2) 추가적인 利子收益에 대한 제한. 利子收益은 24개월 이상의 기간에 대한 조건부 여서는 안된다.
- 3) 最低 保障金利
- 4) 最大 保障死亡費用
- 5) 기타 保障費用
- 6) 解約費用 또는 一部引出費用

5. 主保險의 변화

만약 保險契約者가 主保險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면, 변화의 시기나 지급금액에 대한 제한이 증권에 명시되어야 한다. 만약 主擔保를 증가시킬 수 있는 권리를 保險契約者가 갖는다면 새로운 可爭期間(period of contestability)과 (또는) 자살이 追加擔保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증권에 명시되어야 한다.

6. 保險料 納入의 猶豫期間과 失效

보험회사는 담보가 끝나는 시점의 최소한 30일 이전에 保險契約者의 가장 최근의 주소로 失效에 관한 문서를 발송해야 한다. 可變 UL상품에서는 실효후 최소한 30일 또는 州法에 따른 猶豫期間이 제공되어야 한다. 증권에 달리 명기되어 있지 않으면 純解約還給金이 영이 되는 시점에서 실효가 성립되어야 한다.

(주: 固定 UL상품에는 州法에 요구되는 標準猶豫期間을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年齡이나 性別의 不實告知

만약 연령이나 성별에 대한 不實告知가 발생한다면, 死亡保險金은 올바른 연령이나 성별에서 가장 최근의 死亡保險料에 의거해 구입할 수 있는 액수가 된다. 保險監督官은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다른 방법을 승인할 수도 있다.

8. 滿期日

만약 증권에 만기일이 제시되어 있으면 계획된 保險料가 제때에 지급되더라도 담보가 만기까지 계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

VIII. 公示要件(Disclosure Requirements)

1. 初期公示(Initial Disclosure)

UL상품의 宣傳, 募集(solicitation), 協商(negotiation)과 관련되어 다음에 대한 公示가 있어야 한다.

1) 증권의 費用要素와 給付金에 연관하여

- a. 증권의 保障費用要素나 給付金
- b. 實際金利, 實際費用등의 非保障的 性質과, 이러한 요소를 保險者가 변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데 대한 설명
- c. 特定金利가 적용되어야 하는 증권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 適用金利에 대한 제한

(주: 證券費用要素는 主擔保 또는 기타 給付金の 1,000달러당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金利, 死亡率, 事業費用(expense charges),) 등이 있으나, 維持率에 대한 가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2) 證券價額의 例示는 상응하는 純解約還給金을 수행해야 한다.

3) 특정한 實際金利를 적용하는데 관련된 진술에는 金利가 결정되는 빈도와 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金利連動 UL상품인 경우는 연동대상이 기술되어야 한다. 게다가 金利를 결정하는 시기와 빈도, 연동대상조정의 시기와 빈도도 기술되어야 한다.

5) 實際 金利, 死亡率, 費用要素에 기초한 例示 給付金은 그 給付金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진술을 수반해야 한다.

6) 만약 保障費用要素 또는 初期證券費用要素가 정으로 證券價額이 만기일 이전에 소진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담보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종결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러한 사실이公示되어야 한다.

7) 위의 요건을 제8장에 언급되는 公示陳述의 사용에 의해 충족되어야 한다.

(주: 이 장의 목적은 不公正去來慣行에 대한 모델법안이나 광고와 모집에 대한 모델規定을 대체하거나 그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이 장은 同法案이 UL保險證券樣式을 포괄하지 못하는 만큼 그것을 보충하며 그리고 일반대중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영역을 커버한다.)

2. 販賣時의 公示

代理人은 請約書를 받을 때 請約者에게 “請約者를 위한 保險證券情報 陳述書(이하 陳述書; Statement of Policy Information for Applicant)”를 제공해야 한다. 예외는 다음 문항에 제시될 것이다. 保險料, 死亡保險金, 積立金の 例示는 유효한 현존 증권에 적용되는 實際金利와 증권상의 保障金利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타 金利에 대한 公示는 없어도 된다. 請約者를 위한 保險證券情報가 청약시 제공되지 않는다면 청약 이후 15일 (working days) 이내에 제공되어야 하며 최소한 증권발행 5일 이전이어야 한다.

만약 請約者를 위한 保險證券情報의 제공후 5일이 경과하기 전에 증권이 발행된다면 freelook period 가 15일로 확대되어야 한다. 陳述書가 청약시 제공되지 않는다면 타증권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陳述書가 제공된다는 언급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3. Direct Response Solicitation

Direct Response Solicitation방법의 경우는 10일 이상의 無條件附 償還條項 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한 진술서가 증권의 발행시 제공되어야 한다.

IX. 保險契約者에 대한 定期的 公示 (Periodic Disclosure to Policyowner)

1. 요건

保險契約者가 증권의 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고서를 비용의 부과없이 최소한 년 1회 이상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증권에 명기되어야 한다. 報告書期間의 중기가 보고서 발송일 3개월 이전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해야 한다.

1) 報告書期間의 始期와 終期

2) 이전 報告書期間의 終期와 現報告書期間 終期에서의 證券價額

3) 報告書期間동안 證券價額에 적립 또는 차감된 총금액과 金利, 死亡率, 費用, 特約등 항목별 변화

4) 報告書期間 終期の 실제 死亡保險金

5) 報告書期間 終期の 純解約還給金

6) 報告書期間 終期の 未償還 貸出金額

7) 固定 UL에 있어서 保障金利, 死亡率, 附加費用, 계획된 保險料의 가정하에서 純解約還給금이 次期 報告書期間의 終期까지 계약이 유효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에 있다면 이 효과에 대한 주의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8) 可變 UL에 있어서 保障金利, 死亡率, 附加費

用的 가정하에서 純解約還給金이 次期 報告書期間의 終期까지 追加保險料의 납입이 없는 한 계약이 유효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에 있다면 이 효과에 대한 주의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X. 金利連動 UL商品(Interest-Indexed Universal Life Insurance Policies)

1. 初期申告要件(Initial Filing Requirements)

金利連動 UL의 신고와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정보는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에서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취급되어야 한다.

- 1) 다음 사항을 포함한 金利의 결정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한다.
 - a. 指數(index)에 대한 진술
 - b. 指數의 값과 실제 適用金利의 관계
 - c. 金利 決定의 빈도와 시점
 - d. 두가지 이상의 金利가 證券價額의 다른 부분에 적용되는 경우의 金利配分
- 2)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保險者의 투자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保險者의 再投資危險에 대한 평가
 - b. 자금유출에 따른 자본손실 위험에 대한 평가
 - c. 적절한 투자가 불가하거나 충분한 금액의 투자가 불가할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한 평가
 - d. 連動金利가 保障金利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평가

e. 金利連動 UL을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양과 유형

f. 장래 획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의 양과 유형

3) 만약 증권이 만기 이전의 특정 기간동안만 연동된다면 동기간의 만기이후 金利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한다.

4) 指數에 추가해서 또는 연동대상을 대신한 保障金利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한다.

5) 最大保險料 한계와 그 적용 조건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한다.

2. 追加 申告要件

1) 매년 모든 保險者는 제 10장 (c)에 수록된 예와 유사한 “計理人 意見書(Statement of Actuarial Opinion)”를 제출해야 한다.

2) 매년 모든 保險者는 金利連動 UL과 관련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양과 종류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시행에 앞서 모든 국내 保險者는 投資戰略이나 金利 決定方法의 중요한 변화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指數의 정의와 양식의 변화를 초래한다면 (즉, Section A에 기술된 정보상의 변화) 또는 金利連動 UL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양과 종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 변화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 金利連動 UL상품은 指數의 장래가치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現在 責任準備金 算出法 (current valuation laws)의해 정확히 責任準備金이 산출되지 않는 점이 있다. 초안입안자의 자의적 責任準備金과 (또는) 剩餘金 特定金額의 자의적 헌납의 설정을 요구하는 責任準備金 算出法은 비는

리적이고 운용 불가능 할 것이기 때문에 기각했다. 매년 계리적 의견과 더불어 위의 항목의 신고, 責任準備金 算出을 요구함에 있어 초안입안자는 責任準備金 算出法의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하려 했다. 그 원칙이란 장래 계약상 의무를 충족시키는 保險者의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指數樣式을 작성함에 있어 保險者의 경험과 더불어 본장에 제공된 정보의 責任準備金 算出이 장래의 보다 과학적인 責任準備金 算出法으로 나아갈 것이다.

자금흐름과 金利連動 UL을 지탱하는 자산의 질

과 양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대부분의 관련 위험은 保險者와 감독기관에 의해 責任準備金이 算出된다. 이는 이러한 상품의 責任準備金 算出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실험과 다양성을 허용화하면서 일반대중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3. 金利連動 UL에 대한 計理人 意見書

여기서는 金利연동 UL에 대한 계리인 의견서에 대한 원문을 수록하고자 한다.

I _____, am _____

(Name)

(position or relationship to Insurer)

for the XYZ Life Insurance Company(The Insurer)in the state of _____

(State of Domicile of Insurer)

I am a member of the American Academy of Acturies(or if not, state other qualifications to sign annual statement actuarial opinions).

I have examined the interest-indexed universal life insurance policies of the Insurer in force as of December 31, 19XX, encompassing _____ number of policies and \$ _____ of insurance in force.

I have considered the provisions of the policies. I have considered any reinsurance agreements pertaining to such polic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dentified assets and the investment policy adopted by the Insurer as they affect future insurance and investment cash flows under such policies and related assets. My examination included such tests and calculations as I considered necessary to form an opinion concerning the insurance and investment cash flows arising from the policies and related assets.

I relied on the investment policy of the Insurer and on projected investment cash flows as provided by _____, Chief Investment Officer of the Insurer.

The tests were conducted under various assumptions as to future interest rates, and particular attention was given to those provisions and characteristics that might cause future insurance and investment cash flows to vary with changes in the level of prevailing interest rates.

In my opinion, the anticipated insurance and investment cash flows referred to above make good and sufficient provision for the contractual obligations of the Insurer under these insurance policies.

Signature of Actuary